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및 과년도 미납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분담금 징수 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5896호)에 의거,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분담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2019년 6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및 과년도 미납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징수를 안내드립니다.

2019. 6. 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 01. 법률 개정 사항

### 개정조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제4항 신설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④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 '18.12.11. 공포, '19.6.12. 시행

### 개정사유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와 미납부자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보상재원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02. 과년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미납 분담금 징수 안내

관련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부과대상자	'14년~'17년 부과대상자 중 부과일 기준 미납자 245명
부과금액	<b>과년도 미납금액</b> ▶ 개별 부과금액 = 과년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분만건수 × 분만단가 ※ 분만단가: ('14년 ~ '16년) 분만 1건당 1,160.94원 / ('17년) 분만 1건당 234.39원
징수방법	<b>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공제</b>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법 제46조제4항)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추후 가상계좌 납부안내 예정
징수시기	'19.7.23. ~ '19.12.31.
보건의료기관별 미납 분담금	개별 발송된 납부안내문 참고('19.6.24.발송)

개별기관 분담금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접속
- ②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상단) 선택 ③ 「개별분담금 조회」(좌측) 선택
- ④ 요양기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03. 기타 사항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이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한 공동의 운영재원으로 국가가 70%, 분만의료기관이 30% 분담하여 마련하게 되며,
  -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청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될 경우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의 보상금으로 사용됨.

※ 개별분담금을 납부한 의료기관은 보상금 지급 시 별도 납부하는 금액은 없으며, 매년 적립목표액 산정에 따른 개별분담금만 납부하게 됨.